

급식 공급계약서
[시설운영위탁급식]

더비다요양원



급식(시설운영위탁포함) 공급계약서

위탁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더비다요양원 을 “갑”이라 하고 위탁운영자 썬가온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 1조[용어의 정의]

1. “시설운영 위탁급식”이라함은 급식소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조리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이라 함은 요양원내 조리실에서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3. “식자재”라 함은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소에 반입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 운반, 배식 등에 필요한 건축물, 기자재, 조리기구 등을 말한다.

제 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년 6 월 1 일 부터 2027 년 5 월 31 일 까지로 한다.
상호 간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 서면을 통한 갱신 거절의 의사전달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3조[위탁범위]

1. “갑”은 “을”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조리 장소, 조리사 휴게실,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을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공간과 시설 및 기타 등을 이용하여 요양원 내의 장소에서 식자재, 소모품 등을 구비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고 어르신과 직원에게 급식(조식, 중식, 석식, 간식)을 제공한다.
3. “갑”의 요청에 의한 특식, 주문식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추가비용 발생)
4. “갑”은 조리실 운영 및 직원관리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단, 위생 부분은 서로 협의.)

제 4조[시설 설치 및 사용]

1. “을”은 “갑”이 제공한 장소를 위탁 운영하며 집기, 비품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가진다.
2. “을”은 “갑”과의 계약 기간 내에 “을”이 설치한 기기 부분(“을”의 자산)만 수리·보수한다.
그 외 “갑”의 설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설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을”이 출자하여 설치한 집기류, 기구, 시설물 등은 “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 5조[시설 관리 및 책임]

1. “갑”의 관리 및 책임 사항
 - 1) 식당 건물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 2) 식당 건물 내의 전기시설, 환풍시설, 오수정화, 공조, 방충/방서 및 각종 건물 소득 등 이에 필요한 설치
 - 3) 상·하수도, 전기, 가스비, 생활쓰레기 비용 등 일반 관리비
 - 4) 상기 1) ~ 3) 항까지의 공급 및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 5) 상기 사항 이외에 “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갑”에게 요청하여 인정된 사항

2. “을”의 관리 및 책임 사항

- 1) 식재료 및 조리엔 필요한 소모품
- 2) 식수 체크 유지비용, 음식물처리비용
- 3) “을”이 식당 운영 중 추가로 필요한 기물, 능률 제고 및 품질향상 또는 쾌적한 공간 창출에 필요한 사항으로 “갑”이 승인한 것.

제 6조[위생 및 안전점검]

1. “을”은 수시로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물 및 급식기구와 급식 조리과정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3. “갑”의 감독관청에서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도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4. “갑” 또는 “갑”의 감독청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급식단가]

1. 어르신 : 1인당 1일 금 일만일천사백원(VAT포함) 으로 한다.
(급식 = 어르신 1인 : 1식 3,800원 * 일 3회 = 11,400원)
2. 직원이 식사를 원할 시 어르신과 동일한 금액으로 어르신과 동일한 식사를 제공한다.
3. 물가 변동으로 급식비 인상 요인이 발생시 물가 상승률과 보호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8조[급식비의 수납 및 대금정산]

급식비의 대금 정산은 매월 말일 실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로 결제한다.

제 9조[식단]

1.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식단표를 급식 개시 5일 전에 1개월분의 식단표를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이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시정 한다.

제 10조[급식회수 및 급식시간]

급식 횟수는 일 3회로 하며, 급식 시간은 요양원의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제 11조[대체 급식 제공]

“을”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원에서 급식을 조리, 가공할 수 없을 경우 대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2조[계약의 해지]

1. “갑”은 “을”이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공된 급식이 계속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2) 제공된 급식으로 인하여 위생 사고가 계속 발생 시
 - 3) 정당한 이유 없이 급식 제공을 중단할 때
2. “갑”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고 조리원 등 직원 해고에 관한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어르신 인원(식수) 감소로 인한 “을”의 손해 발생 시 “을”은 식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4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상거래법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6년 5월 20일

[갑]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물양로 4번길 34-33

상 호 명 : 더비다요양원

대 표 자 : 임 경 애

연 락 처 : 032-891-0121



[을]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땡이길 63

회 사 명 : ㈜가온

대 표 자 : 서 종 철

연 락 처 : 010-3302-1993

